

Legal Update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공고 (26/2016) -

지평 미얀마팀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을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의 목록을 공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MIC는 2013년 최초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을 공고(1/2013)하였고, 2014년 전면 개정(29/2014) 이후 2016년 3월에 추가 개정안을 담은 MIC 공고 (26/2016)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MIC 공고는 금지되는 사업 1개를 추가하였고,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4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중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던 다수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재)
- 분수령 또는 집수 보호림, 종교지, 전통보호지역, 목초지, 이동농업지, 수자원 등을 파괴하는 경제활동 ¹	- N/A	- 신설규정

¹ Activities which are deemed to deteriorate the watershed forests, sites for religious and spirited affairs , pasture land , cultivated farm land and water sources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hybrid) 종자의 생산 및 유통 - 다수확 종자 및 고유 종자의 생산 및 보급 - 고무 및 고무제품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됨. <u>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및 산림부²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됨. 현지인과 합작투자가 강제되지 않음 - <u>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u> 관련부처의 추천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新)철로, 역, 빌딩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³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⁴의 추천 필요함 - Myanmar Railways와 합작투자 또는 <u>BOT 방식 투자</u>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 운항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anmar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u>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송부 소유 부지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타워 및 기계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anmar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u>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u>

²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³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⁴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재)
- 상업적 목적을 위해 철도부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의 포괄적 사용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
- 차량 점검, 운전연습센터, 수리 및 정비 훈련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 ⁵ 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 현지인 50% 및 외국인 50%의 합작투자 가능 - 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철도 사업을 위한 전기 생산	-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
- 백신의 제조 및 유통	- N/A	- 신설규정 - 정부와 합작투자 형태로 투자 가능함 - WHO 및 GMP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MIC 공고는 동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i) MIC가 관련부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부처의 추천서를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고, (ii) MIC가 관련부처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100%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⁵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MIC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은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서비스 사업분야(통상적으로 소규모 투자로서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기 힘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가능 사업분야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합작투자가 강제되거나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MIC 공고를 확인하여 관심 사업분야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MIC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MIC에 문의하여 외국인에게 금지되는지,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강제되는지, 외국인이 100%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